



KOREA CUSTOMS SERVICE



WORLD CUSTOMS ORGANIZATION  
ORGANISATION MONDIALE DES DOUANES

## 세계관세기구와 대한민국 관세청간 대한민국, 천안 WCO 아·태지역 훈련센터 설립에 관한 양해각서

세계관세기구(World Customs Organization, 이하 WCO라 한다)와 대한민국 관세청은 :

교역량 증가, 무역의 세계화, 지역통합에 따라 관세당국들이 많은 도전에 직면하고 있음을 인지하고;

무역패턴의 변화, 무역원활화 필요성의 증가, 한정된 자원을 이용한 산출증대 요구로 관세당국과 WCO간 협력증진이 더욱 더 필요함을 인지하고;

국제적·지역적 협력이 세관의 효율성 및 효과성 증진을 위한 유용한 틀을 제공함을 인식하고;

주요 세관관련 국제협약, 권고, 기타 표준의 통일된 이행을 위하여 정보 전파, 훈련 및 기술지원이 간요함을 인식하고;

WCO가 회원국들에게 의미있는 훈련 및 기술지원을 제공함을 인식하고;

WCO의 회원국 지원 노력을 후원함에 있어서, 한국의 중요한 역할 및 가능성을 인식하고

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:

제 1 조

WCO와 한국 관세청은 한국의 천안에 WCO 지역훈련센터(이하 훈련센터라 한다)를 설립한다. WCO는 지역훈련, 기술지원 회의, 기타 세관관련 행사 목적으로 훈련센터 시설을 사용한다.

제 2 조

제1조에 명시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, 한국 관세청은 WCO가 충남 천안에 있는 관세국경관리연수원을 관세훈련센터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.

제 3 조

한국 관세청은 훈련센터 운영을 계속할 것이며, 국내의 프로그램을 위하여 사용한다.

제 4 조

1. 양 당사자는 훈련센터 시설의 사용 결정을 위하여 서로의 훈련계획을 협의한다. WCO는 늦어도 2개월 전까지 각각의 계획된 행사에 대하여 통지하고, 해당 행사를 확정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.
2. 양 당사자는 본 양해각서 서명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행 문제 조정을 위한 연락담당관을 지정한다.

제 5 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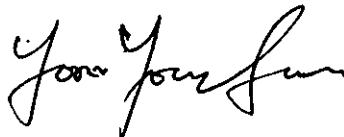
훈련센터 사용을 위한 기술적 요건

한국 관세청은 WCO가 강의실 및 회의실, 통상적인 훈련 보조물, 숙소, 기타 훈련센터 서비스 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.

제 6 조

1. 본 양해각서는 서명일에 효력이 발생한다.
2. 본 양해각서는 한 당사자의 서면 통보에 의하여 언제든지 종결될 수 있으며, 상대 당사자가 해당 통보를 받는 즉시 효력이 중지된다.
3. 본 양해각서는 양 당사자의 서면 합의에 의하여 수정될 수 있다.

이 문서는 2010. 6. 26. 브뤼셀에서 영어 및 한국어로 각 2부씩 작성하여 체결하였으며, 각각의 문서는 각 당사자들을 위하여 작성되었다. 이 양해각서의 해석이 상이할 경우, 분쟁 해결은 영문본에 기초한다.



윤 영 선  
관세청장  
대한민국 관세청



미꾸리야 구니오  
사무총장  
세계관세기구